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253호

2009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우리업계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별표 22 제1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용기의 종류	재검사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500L 미만	3년마다	2년마다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500L 미만	4년마다	3년마다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5년마다(설계조건에 반영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용기부속품(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	2년마다	
	용기에 부착된 것(내용적 125리터 이하의 용기용 용기부속품은 제외한다)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비 고

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한다.
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고 내용적이 500L 미만인 용접용기에 대하여는 재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중 첫 번째 재검사를 받는 용기로서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 재료로 제조된 용기는 4년
 - 나.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 다.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
3. 내용적 20L 미만인 용접용기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 자동차용 용기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용기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4조에 규정된 해당 자동차의 차령기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
4. 사용된 1회용 용기와 내용적이 45L이상 120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폐기한다.
5. 내용적 125L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한다.
6.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7. 내용적이 50L 미만인 액화석유가스 용접용기의 신규검사 후 최초의 재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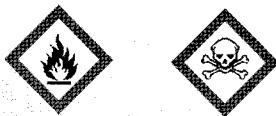
별표 24 제1호가목4) 중 “ℓ”를 “L”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의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다목의 제목 중 “실린더캐비넷”을 “실린더캐비닛”으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4) 중 “기초: TP”를 “기호: DP”로 한다.

- 8) 내압시험압력(초저온용기 및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용기는 제외)(기호 : TP, 단위 : MPa)
- 9)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초저온용기 및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용기는 최고충전압력(기호 : FP, 단위 : MPa)



비 고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기한다.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2.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방법
-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cm의 백색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 2)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
글자로 가로·세로 5cm의 크기로 “선박
용”이라고 표시한다.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액화석유가스	회색	액화암모니아	백색
수소	주황색	액화염소	갈색
아세틸렌	황색	그 밖의 가스	회색

5. 그 밖의 가스에는 가스명칭 하단에 가로·
세로 5cm의 크기의 백색글자로 용도(“절단
용”)를 표시할 것
6. 자동차의 연료장치용 용기의 외면에는 그
용도를 “자동차용”으로 표시할 것

별표 31 제4호의 표 중 가. 전문교육란과 나 특별교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표 중 비고란
의 2. 중 “나목1)”을 “나목1) · 같은 목3)”으로 한다.

가. 전문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2)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검 사기관의 기술인력은 제외)
	2)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3) 운반책임자	
	4)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나. 특별교육	1) 운반차량운전자	신규 종사 시 1회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4)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제1호 표 중 “액화석유가스용 용접
용기”란의 개정규정과 별표 22 제1호 비고 4 및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별표 24 제1호나
목1) 비고 1 및 6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내용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
용 용접용기에 대한 내용연한은 별표 22 제1호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이를 시행한다.

1. 제조후 경과년수가 28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2. 제조후 경과년수가 27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3. 제조후 경과년수가 26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p> <p>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p> <p>1. 용기</p> <p>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회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 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 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용기의 종류</th> <th colspan="3">재검사주기</th> </tr> <tr> <th colspan="3">신규설치 후 경과연수</th> </tr> <tr> <th></th> <th>15년 미만</th> <th>15년 이상 20년 미만</th> <th>2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용접용기</td> <td>500L 이상</td> <td>5년마다</td> <td>2년마다</td> <td>1년마다</td> </tr> <tr> <td>500L 미만</td> <td>3년마다</td> <td>2년마다</td> <td>1년마다</td> </tr> <tr> <td rowspan="2">(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r> <tr>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r> <tr> <td rowspan="2">이음제 또는 용기 또는 복합자물용기</td> <td>500L 이상</td> <td colspan="3">5년마다</td> </tr> <tr> <td>500L 미만</td> <td colspan="3">신규설치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r> <tr> <td colspan="4"> <p>용기부속품(자식경제 부장관이 청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p> <p>용기에 부착된 것인즉, 친연가스 자동차용기용 브브 외의 내용적 125 리터 이하의 용기용 용기부속품은 제외한다</p> <p>검사 후 2년이 지난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p> </td> </tr> <tr> <td colspan="4"> <p>비고</p> <p>1. ~ 3. (생략)</p> </td> </tr> <tr> <td colspan="4"> <p>[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p> <p>1. —</p> </td> </tr> <tr> <td colspan="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용기의 종류</th> <th colspan="3">재검사주기</th> </tr> <tr> <th colspan="3">신구설치 후 경과연수</th> </tr> <tr> <th></th> <th>15년 미만</th> <th>15년 이상 20년 미만</th> <th>2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td> <td>500L 이상</td> <td>5년마다</td> <td>2년마다</td> <td>1년마다</td> </tr> <tr> <td>500L 미만</td> <td>4년마다</td> <td>3년마다</td> <td>2년마다</td> </tr> <tr> <td colspan="4"> <p>액화석유가스용 복합제로용기</p> <p>원형대설조작에 반영되고 자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한 것으로 수신을 받은 경우에는 10년</p> </td> </tr> <tr> <td colspan="4"> <p>내용적 125리터</p> </td> </tr> <tr> <td colspan="4"> <p>1. ~ 3. (현행과 같음)</p>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용기의 종류	재검사주기			신규설치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이음제 또는 용기 또는 복합자물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500L 미만	신규설치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신 설)				<p>용기부속품(자식경제 부장관이 청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p> <p>용기에 부착된 것인즉, 친연가스 자동차용기용 브브 외의 내용적 125 리터 이하의 용기용 용기부속품은 제외한다</p> <p>검사 후 2년이 지난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p>				<p>비고</p> <p>1. ~ 3. (생략)</p>				<p>[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p> <p>1.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용기의 종류</th> <th colspan="3">재검사주기</th> </tr> <tr> <th colspan="3">신구설치 후 경과연수</th> </tr> <tr> <th></th> <th>15년 미만</th> <th>15년 이상 20년 미만</th> <th>2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td> <td>500L 이상</td> <td>5년마다</td> <td>2년마다</td> <td>1년마다</td> </tr> <tr> <td>500L 미만</td> <td>4년마다</td> <td>3년마다</td> <td>2년마다</td> </tr> <tr> <td colspan="4"> <p>액화석유가스용 복합제로용기</p> <p>원형대설조작에 반영되고 자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한 것으로 수신을 받은 경우에는 10년</p> </td> </tr> <tr> <td colspan="4"> <p>내용적 125리터</p> </td> </tr> <tr> <td colspan="4"> <p>1. ~ 3. (현행과 같음)</p> </td> </tr> </tbody> </table>				용기의 종류	재검사주기			신구설치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4년마다	3년마다	2년마다	<p>액화석유가스용 복합제로용기</p> <p>원형대설조작에 반영되고 자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한 것으로 수신을 받은 경우에는 10년</p>				<p>내용적 125리터</p>				<p>1. ~ 3. (현행과 같음)</p>			
용기의 종류	재검사주기																																																																																												
	신규설치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이음제 또는 용기 또는 복합자물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500L 미만	신규설치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신 설)																																																																																													
<p>용기부속품(자식경제 부장관이 청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p> <p>용기에 부착된 것인즉, 친연가스 자동차용기용 브브 외의 내용적 125 리터 이하의 용기용 용기부속품은 제외한다</p> <p>검사 후 2년이 지난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p>																																																																																													
<p>비고</p> <p>1. ~ 3. (생략)</p>																																																																																													
<p>[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p> <p>1.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용기의 종류</th> <th colspan="3">재검사주기</th> </tr> <tr> <th colspan="3">신구설치 후 경과연수</th> </tr> <tr> <th></th> <th>15년 미만</th> <th>15년 이상 20년 미만</th> <th>2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td> <td>500L 이상</td> <td>5년마다</td> <td>2년마다</td> <td>1년마다</td> </tr> <tr> <td>500L 미만</td> <td>4년마다</td> <td>3년마다</td> <td>2년마다</td> </tr> <tr> <td colspan="4"> <p>액화석유가스용 복합제로용기</p> <p>원형대설조작에 반영되고 자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한 것으로 수신을 받은 경우에는 10년</p> </td> </tr> <tr> <td colspan="4"> <p>내용적 125리터</p> </td> </tr> <tr> <td colspan="4"> <p>1. ~ 3. (현행과 같음)</p> </td> </tr> </tbody> </table>				용기의 종류	재검사주기			신구설치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4년마다	3년마다	2년마다	<p>액화석유가스용 복합제로용기</p> <p>원형대설조작에 반영되고 자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한 것으로 수신을 받은 경우에는 10년</p>				<p>내용적 125리터</p>				<p>1. ~ 3. (현행과 같음)</p>																																																													
용기의 종류	재검사주기																																																																																												
	신구설치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4년마다	3년마다	2년마다																																																																																									
<p>액화석유가스용 복합제로용기</p> <p>원형대설조작에 반영되고 자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한 것으로 수신을 받은 경우에는 10년</p>																																																																																													
<p>내용적 125리터</p>																																																																																													
<p>1. ~ 3. (현행과 같음)</p>																																																																																													



법규 및 정책동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4. 에어줄 제조용, 용접용 또는 절단용으로 사용하는 이음매 없는 용기와 접합용기 또는 날붙임용기로서 내용적이 1L 이하인 1회용 용기는 사용 후 폐기한다.</p> <p>5. ~ 6. (생 략)</p> <p>7. 내용적이 50L 미만인 액화석유가스 용접용기의 신규검사 후 최초의 재검사 주기는 4년으로 한다.</p>	<p>4. 사용된 1회용 용기와 내용적이 45L 이상 120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과년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폐기한다.</p> <p>5. ~ 6. (현행과 같음)</p> <p>7. _____ 5년으로 _____</p>																								
2. (생 략) [별표 31] 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2. (현행과 같음) [별표 31] 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의 대상범위, 기간 및 과정	4. _____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육과정</th> <th>교육대상자</th> <th>교육기간 등</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가. 전문교육</td> <td>1)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2)의 대상자는 제외한다</td> <td>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재보증 기 술발달 등 안전관리의 환경변화로 안전교육 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td> </tr> <tr> <td>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td> <td>설비설 등 안전관리의 환경변화로 안전교육 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td> </tr> <tr> <td>3) 운반책임자</td> <td>지식경쟁부작용이 인 정하는 경우</td> </tr> <tr> <td>4) 경사기관의 기술인력</td> <td>지식경쟁부작용이 인 정하는 경우</td> </tr> </tbody> </table>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 전문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2)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재보증 기 술발달 등 안전관리의 환경변화로 안전교육 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설비설 등 안전관리의 환경변화로 안전교육 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운반책임자	지식경쟁부작용이 인 정하는 경우	4) 경사기관의 기술인력	지식경쟁부작용이 인 정하는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육과정</th> <th>교육대상자</th> <th>교육기간 등</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나. 특별교육</td> <td>1) 원자력운전자</td> <td>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후 3년이 되 는 해마다 1회검사기 관의 기술인력은 제 외</td> </tr> <tr> <td>2) 고압가스 사용장치 운전자</td> <td>_____</td> </tr> <tr> <td>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td> <td>_____</td> </tr> <tr> <td>(신설)</td> <td>4) 고압가스 사용장치 책임원</td> </tr> </tbody> </table>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나. 특별교육	1) 원자력운전자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후 3년이 되 는 해마다 1회검사기 관의 기술인력은 제 외	2) 고압가스 사용장치 운전자	_____	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_____	(신설)	4) 고압가스 사용장치 책임원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 전문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2)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재보증 기 술발달 등 안전관리의 환경변화로 안전교육 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설비설 등 안전관리의 환경변화로 안전교육 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운반책임자	지식경쟁부작용이 인 정하는 경우																							
	4) 경사기관의 기술인력	지식경쟁부작용이 인 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나. 특별교육	1) 원자력운전자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후 3년이 되 는 해마다 1회검사기 관의 기술인력은 제 외																							
	2) 고압가스 사용장치 운전자	_____																							
	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_____																							
	(신설)	4) 고압가스 사용장치 책임원																							
<table border="1"> <tbody> <tr> <td rowspan="5">다. 양성교육</td> <td>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td> <td>_____</td> </tr> <tr> <td>2) 낭등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td> <td>_____</td> </tr> <tr> <td>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td> <td>_____</td> </tr> <tr> <td>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td> <td>_____</td> </tr> <tr> <td>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td> <td>_____</td> </tr> </tbody> </table>	다. 양성교육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2) 낭등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table border="1"> <tbody> <tr> <td rowspan="5">다. 양성교육</td> <td>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td> <td>_____</td> </tr> <tr> <td>2) 낭등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td> <td>_____</td> </tr> <tr> <td>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td> <td>_____</td> </tr> <tr> <td>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td> <td>_____</td> </tr> <tr> <td>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td> <td>_____</td> </tr> </tbody> </table>	다. 양성교육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2) 낭등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다. 양성교육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2) 낭등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다. 양성교육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2) 낭등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_____																							
[비고]	[비고]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가목1)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2)·같은 목3) 및 나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_____ 나목1) · 같은 목3)의 _____																								
2의2)~ 7. (생 략)	2의2)~ 7.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제1호 표 중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란의 개정규정과 별표 22 제1호 비고 4 및 7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별표 24 제1호나목1) 비고 1 및 6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④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내용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에 대한 내용연한은 별표 22 제1호 비고 4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이를 시행한다.

1. 제조 후 경과년수가 28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2. 제조 후 경과년수가 27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3. 제조 후 경과년수가 26년 이상 경과된 용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